

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19년도 공개재분류 결과서

공 개 재 분 류 대 상 기 록 물 목 록					공개재분류 결과	
연번	소관부서	건 제목	생산연도	기존 공개이력	공개구분	비공개 호수 *
1	항만물류과	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2	항만물류과	200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	2007	비공개	비공개	3
3	항만물류과	청원경찰 인사카드 송부	2007	비공개	공개	-
4	항만물류과	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송부	2007	비공개	공개	-
5	항만물류과	「전하만 공유수면 매립공사(2공구) 전면책임감리용역」 전자입찰 공고 알림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6	항만물류과	2006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	2007	비공개	공개	-
7	항만물류과	제12회 바다의 날 포상대상자 추천	2007	비공개	공개	-
8	항만물류과	제12회 바다의날 포상대상자 추천 알림	2007	비공개	공개	-
9	항만물류과	설연휴 행선지 제출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10	항만물류과	2006년도 하반기 비밀소유현황 제출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11	항만물류과	2006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등 실시	2007	비공개	공개	-
12	항만물류과	07년 상반기 울산항 항만수역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제출 요청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13	항만물류과	울산항 선박 통항안전 확보를 위한 세미나 참석 요청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14	항만물류과	해양안전대책 추진계획 제출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15	항만물류과	특별점검결과 출항정지 선박의 출항정지 해제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16	항만물류과	하반기 어선점검 결과 보고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17	항만물류과	2007년 국적선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행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18	항만물류과	06년 겨울철 국적 위험물운반선 점검 결과 보고	2007	비공개	비공개	2
19	항만물류과	07년 설날 연휴기간 대비 선박안전점검 결과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20	항만물류과	유관기관 및 업 단체 비상연락망 정비 유지 협조요청	2007	비공개	비공개	2

연번	소관부서	건 제목	생산연도	기존 공개이력	공개구분	비공개 호수 *
21	항만물류과	컨테이너계속점검방법 승인	2007	비공개	부분공개	7
22	해양수산환경과	울산항 선박 통항안전 확보 세미나 세부추진계획 수립/시행	2007	비공개	비공개	6
23	해양수산환경과	유관기관 및 업,단체 비상연락망 정비 알림	2007	비공개	부분공개	6
24	운영지원과	유관기관 및 업,단체 비상연락망 정비 재통보(수정)	2007	비공개	부분공개	6
25	운영지원과	울산항 선박 통항안전 확보를 위한 세미나 세부 추진계획(안) 수립 보고	2007	비공개	공개	-
26	운영지원과	2006년도 하반기 비밀소유현황 제출	2007	비공개	공개	-
27	운영지원과	2007년도 상반기 비밀소유현황 제출	2007	비공개	공개	-

***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**

- 1호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2호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3호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4호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5호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6호.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7호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
- 8호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